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28.

다. 회 부 일 : 2026. 1.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 <u>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u>어린이놀이기구</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32조제1항).
- 여기서 ‘주변구역’이란 출입문 또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을 말하며(시행령 제29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32조제3항).
- 전국의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11개 시·도, 49개 시·군·구에 총 1,07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2025년 10월 기준)>

(단위: 개소, 대)

시도	계	시설별(개소)				CCTV 설치 대수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3호)	유치원 (4호)	
서울	297	143	16	131	7	1,209
부산	200	7	52	123	18	5,393
대구	27	19	2	6	0	171
인천	14	0	5	6	3	14
대전	147	66	32	23	26	147
경기	67	9	7	51	0	1,760
강원	33	31	1	1	0	56
전북	104	35	19	34	16	245
전남	114	21	38	52	3	508
경북	25	25	-	-	-	138
경남	43	20	-	23	-	206
계	1,071	376	211	450	73	9,847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주1: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도(6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

주2: 아동보호구역 cctv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에 따른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실시 중

- 현행법이 규정하는 아동보호구역으로는 도시공원·어린이집·초등학교·유치원 등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비교 >

현 행	개 정 안
1. 도시공원	(좌 등)
2.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	(좌 등)
3. 초등학교, 특수학교	(좌 등)
4. 유치원	(좌 등)
(신 설)	5.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1),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음(시행령 별표 2).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법률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법」	휴게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의료법」	의료기관
「주택법」	주택단지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
「관광진흥법」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법」	하천구역, 하천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대상시설이 8만개를 초과하는 등 그 범위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라고 하여 다수의 아동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2026년 3월 현재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은 총 84,92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어린이놀이기구시설 현황 >

(단위: 개소수)

총계		84,926	
주택단지	45,769	자연휴양림	141
도시공원	12,375	육아종합지원센터	129
유치원	7,294	학원	107
어린이집	7,080	박물관	102
학교	6,924	대규모점포	89
놀이제공영업소	1,851	하천	86
식품접객영업소	1,349	목욕장영업소	82
아동복지시설	432	공공도서관	55
종교시설	424	유아교육진흥원	47
주상복합	346	도로휴게시설	32
야영장	182	의료기관	30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아동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유괴 등에 취약한 저연령 아동과 장애아동에 집중하여 운영 중으로, 보호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실제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놀이 시설은 목욕장 영업소에 설치된 놀이기구시설과 같이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보호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500